

◆ 질의와 회신 ◆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계약 운영 관련

- 회계제도팀 제공 -

1. 계열회사간 공동도급 가능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② 계열관계에 있는 당해지역내의 업체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 까지도 제한하는 것인지를 여부와,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지역 업체간의 공동도급을 허용한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당해지역의 업체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계열회사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금지되는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수의계약 참가자격 관련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

전자입찰에 있어 참가자격을 대표자의 주민등록지를 입찰집행기관의 행정구역에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대표자의 주민등록지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행위에 해당됨.

3. 면세사업자와의 계약시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

【질 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산림조합 등)와 공사계약을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동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해야 함.

4. 지역의무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여부

【질 의】

○○구청의 구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도에는 편집·디자인 부문을 공모

를 통하여 구정신문을 제작·발간하고 있는데

① 2003년 공모공고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이 관련법령을 위배한 계약인지 여부

② 공동계약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구내의 소재한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체결하도록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계약은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의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공동계약체결은 가능할 것이나 동 시행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공사에만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5. 전차 공사자와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가능 여부

【질 의】

·A공사명 : 도로확장공사(공사금액 : 14,367백만원, 발주처 : ○○시)

·B공사명 : 송수관 포설공사(발주예정금액 : 5,000백만원, 발주처 : ○○시)

상기 내용과 같이 ○○시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를 4개회사가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A공사 시행중 동 시에서 발주예정인 B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 당초 계약체결한 공동수급체중 일부 구성원이 회사경영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전차공사가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의 전차시공자는 공동수급체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의 수의계약체결은 불가하나,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바, 전차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전차공사의 분담부분을 시공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되는 것임.

6.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최근 3년간실적 인정범위

【질 의】

2004. 3. 5 서울시 ○○구에서 발주한 가로등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추정가액 230,000천원)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한 전기공사실적(297,000천원)이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주)는 2003. 7. 8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임

회 신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별표 1”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은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确定的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최근 3년간 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이 2004. 3. 5인 경우 2000년, 2001년, 2002년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2003. 12. 31 준공된 실적이라면 최근 3년간 시공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7. 관련협회에 시공실적 신고 누락에 대한 인정 가능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① 2002. 12. 30 준공검사 완료된 ○○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준공대금을 2003. 1. 7 수령함에 따라 2002. 12. 31 기성지급액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0”으로 신고하여 2002년도

실적이 누락되었음.

② 그러나 2002년도 결산서에서는 반영된 사항이므로 금번 발주처에서 발급 받은 실적 증명서를 가지고 2002년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별표 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하면,

“관련협회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된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일부분만 신고한 경우(일부 누락)에는 관련협회의 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8. 입찰참가자격 유·무효 관련

【질 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일이 '04. 2. 13이며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마감일이 '04. 2. 12~2. 17 일인 경우 종전 대표자 명의로 '04. 2. 16일 투찰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9. 책임감리 선정 관련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의 “설계·시공일괄입찰”이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본문의 “일괄입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4호 본문

의 “대안입찰”도 포함되는지 여부

② 대안입찰의 경우 발주청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지만 입찰참가자에게 설계를 제공하였다면 국가계약법 제25조에 의한 “공동수급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질의 1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대안”이라 함은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2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제”라 함은 공동도급운용요령(회계예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원을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구성원’을 말함.

10. 공사이행촉구 불이행시 사후처리 관련

【질 의】

지자체에서 발주한 계약한 공사(계약금액 13억5천만원)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13억원이 가압류 상태로서 수급자가 가압류에 대한 해제의지 및 능력이 없고 기성대가 청구시 대가 지급이 불가하여 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공사이행을 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하고 있으며, 교량설치 공정 지연시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바 수급자에 대한 부정당 제재 및 타설준공 처리 후 타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 바,

질의사항이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동 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공사계약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함.

11. 지체상금 계산시 계약금액에서 공제관련

【질 의】

지체상금을 계산시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기성검사 완료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수하지 않았지만 발주자가 2주일 전부터 상수공급을 위해 사용 관리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체상금을 계산한다.

여기서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12. 타절준공에 따른 준공금(기성금) 배분 관련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선금을 원도급자에게 50%를 지급하였으나 원수급자는 선금을 하수급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다가 중도에 발주처와 원수급자의 계약해지로 타절준공금액(80%)을 확정함.

- ① 이 경우 공사금 잔액의 하도급금 배분방법.
- ② 기성금은 선급금과 지체상금도 하수급업체의 타절기성금에서 공제한 상태에서 잔금에 대하여 나머지 원수급자 지분을 20%에 따라 다시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③ 원수급자의 공사대금 가압류는 하도급직불 합의 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공사대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수급자에 있는지 여부
- ④ 타절준공 후 공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고 지체상금은 보증시공자가 납부하는지에 대하여

회 신

- 질의 ①에 대하여
 - 하도급자와 원도급자의 기성금 배분문제는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 질의 ②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선금반환 사유 발생으로 선금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금 잔액을 미지급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③에 대하여
 - 관련법령에 따라 가압류 등 이전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성(준공)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이 가능하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전에 원도급자의 가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면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 질의 ④에 대하여
 -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 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질 의】

- ① 2003. 12. 1일자로 ○○시가 발주한 “○○공사”를 원도급자인 ‘A건설사업(주)’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신고하였으며 2003. 12. 26일 원도급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 ② 원도급자는 하도급 직불을 합의하였으므로 50%의 타설 기성금에 대하여 하도급업체는 직불을 청구하였던 바,
- ③ ○○시 답변은 계약서작성의 공제조합 보증금 변제가 우선이며, 공제조합에서 불응하기 때문에, ○○시도 채무회수가 우선이므로 하도급대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임.
- ④ 이와관련 ○○시는 기성대가 중 하도급대금 직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 주장대로 선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지 질의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할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있을 경우 동 예규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선금과 상계함.

1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타 구성원의 선금지급 가능여부

【질 의】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본 공사와 관련 없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의 타구성원에 대하여도 당해 선금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제14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선금의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 대표자는 선금의 청구가 불가능 할 것이나 타 구성원의 경우에는 연명으로 선금을 신청할 수 있음.

15. 공정이 누락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 의】

○○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리 - ○○리 법면보수공사 중 토공에서 『법면정리』와 부대공에서 『흙막이공의 천공』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사일반조건』 제19조 2의 규정에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상태, 설계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6.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에 수량산출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내역입찰 공사와 관련하여,

각 구조물의 가시설공(거푸집, 비계, 동바리)은 설계 및 발주시 수량산출서에 의한 수량 산출 후 단가산출서에서 금액을 산출하여 발주내역서에 구조물별 거푸집 1식, 동바리식 1식 공사로 계약체결 되어 시공 중에 있으나, 공사 중에 일부 구조물에서 가시설공(거푸집, 비계, 동바리) 수량이 잘못 산출(누락 또는 과다계상)된 것이 발견되었음.

이와 같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으로 산출된 후 1식공사로 계약된 내역 중 당초 계약시 산출된 수량에 대해 수량산출의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함.